

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, 국공립 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비파괴검사협회,

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(제154조제7항 관련)

1.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(기술기준을 포함한다)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2.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법 제5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
 - 나. 법 제7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군사적 목적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
3.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